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1.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른 경영진단결과 공사와 공단을 동시에 운영하는 기초자치단체는 통합 운영하라는 지방공기업 경영개선명령에 따라 공사와 공단을 통합하여 구미시설공단으로 개편하면서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의 농산물(원예, 화훼 등) 생산, 수출, 유통, 종묘 사업과 농업관련 공영개발 사업 및 농산물수출유통업을 통해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농업수출의 선도적 역할과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구미원예수출공사의 원예사업을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로 변경하고 위탁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8조)
- 나. 공사, 공단 통합에 따라 종전의 구미원예수출공사의 독립채산 방식을 개선하여 구미시에서 지정하는 수입금 출납계좌에 입금 운영하도록 함 (안 제6조)

3. 조례안 : 붙임

4.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5. 관계법령

-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9조
-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9조에 따른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의 농산물(원예, 화훼 등) 생산, 수출, 유통, 종묘 사업과 농업관련 공영개발 사업 및 농산물수출유통업을 통해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의 토지 및 생산시설과 관리·운영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산시설이란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 내 설치된 원예(화훼) 생산시설을 말한다.
2. 기계장비란 사무장비, 기계장비 등을 말한다.
3. 부대시설이란 원예(화훼) 생산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사무실, 기타 각종 자재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부대시설(시스템 관리시설, 자재보관창고 등) 일체를 말한다.

제4조(세입조치)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의 수입금은 구미시의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제5조(수입금)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의 수입금은 농림식품부, 경상북도, 구미시,

농산물유통공사의 지원금 및 장려금, 선도금, 보조금, 전입금, 판매수입금 등으로 한다.

제6조(수입금 입금) ① 원예(화훼)수출 및 판매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금은 익일(금융기관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시 수입금 출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② 농가수출대행수수료 금액도 제1항과 같이 구미시에서 지정하는 수입금 출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시설원예 생산 및 종묘사업
2. 농산물(화훼)수출 및 판매 유통업
3. 원예단지조성 및 분양사업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의 위탁관리)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미시설원예생산 단지 전체 및 일부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구미시설공단
2. 민간단체 및 법인
3. 농업회사법인 및 영농조합법인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재산과 시설의 범위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자(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제9조(수탁관리자의 의무) ① 수탁관리자는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의 생산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수탁관리자는 생산시설, 기계장비, 부대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③ 수탁관리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관리) ① 수탁관리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 받은 재산을 생산시설 운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수탁관리자는 수탁 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의 업무를 지도 및 감독한다.

② 수탁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 재산의 관리 처분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3.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보조금 등) 시장은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 할 수 있다.

제13조(검사 및 보고)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9조 (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과 우리나라 식생활 문화의 전파 등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식품산업을 업으로 하는 자와 농수산물과 식품을 수출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관리위탁”이라 한다)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 2. 4>

③ 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 할 수 있다. <신설 2010. 2. 4>

④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⑤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 2. 4>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2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구미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 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